

# **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## **심사보고서**

### **1. 심사경위**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1. 7 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6. 11. 27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6. 12. 5(화) 제13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12. 5) 상정·가결

### **2. 제안설명의 요지**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에 의거 재단법인평창장학회  
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출연금을 재단  
법인 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기 위한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일반회계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 
함.(안 제2조)
-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  
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3조)
- 기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규정.(안 부칙  
제2항)
-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를 폐지함.(안 부칙제3항)

### **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**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본 조례안은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에 의거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주요 내용을 보면

- 일반회계 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기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「평창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다. 검토의견

- '97년 강원도 종합감사시 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근거를 마련 후 출연토록 시정 처분되어 '98년 12월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」를 제정 운영중이나 "군출현 장학기금"과 "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자산"의 이원화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인 직접 출연하도록 하여 자산을 일원화하고,
- 당초 기금조성의 목표액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므로 지역인재 육성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 
다만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 기금조성의 목표액의 상향과 관련 일반회계에서 정기적으로 장학기금을 출연시 일반재원 감소로 인해 군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

- 아울러 조례안 중에서 출연금의 지원기간 등 관리·운용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#### 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#### 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#### 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: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.

#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24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7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에 의거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출연금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기 위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일반회계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2조)
- 나.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3조)
- 다. 기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규정 (안 부칙제2항)
- 라.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를 폐지함 (안 부칙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기협의 완료
- 다. 입법예고 : 2005. 4. 22 ~ 5. 12 실시결과 의견없음

## 평창군 조례 제 호

#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평창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장학기금의 출연)** 군수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재단법인평창장학회(이하 “장학재단”이라 한다)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**제3조(결산보고서 요구)** 군수는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의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본다
- ③(다른조례의 폐지)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